

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# 심사보고서

2020. 9. 18.

행정재경위원회

|          |    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<br>번호 | 279 |
|----------|-----|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0. 5. 29. 강남구청장(문화체육과)

나. 상정의결

- 제286회 강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 (2020. 6. 11.)  
“심사보류”
- 제28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 (2020. 9. 18.)  
“수정가결”

## 2. 제안설명 요지(뉴디자인국장 : 김희주)

가. 제안이유

- 2020. 4. 23.에 운영을 시작한 세곡 커뮤니티센터 내 ‘세곡마루도서관’ 을 우리구 도서관으로 지정하고, 회원증 재발급 수수료가 재료비에 비해 높아 수수료를 조정하여 주민들의 부담을 낮추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‘세곡마루도서관’ 을 강남구 도서관으로 지정(안 제3조 별표 1)
- RFID카드형 회원증 재발급 수수료를 1,000원으로 조정(안 제22조)

다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
## 「도서관법」

제27조(설치 등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·운영하여야 한다.
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어르신복지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
  -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  - 입법예고(2020. 4. 17.~ 5. 7.) 결과, 아래의 의견 접수
    - ‘세곡마루 작은도서관’에서 ‘세곡마루도서관’으로 명칭 수정 요청(어르신복지과, 2020.4.29.)
  -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  -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  - 성별영향분석평가 : 분석평가지 특기할 사항 없음(분석평가 완료)

#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구경남)

○ 2020년 4월 23일 운영을 시작한 ‘세곡마루도서관’은 강남구 헌릉로590길 68 세곡커뮤니티센터 2층에 위치하고 있는 도서관으로 조례에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임.

- 현재 강남구립도서관은 26개가 운영 중이며 강남문화재단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나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하여 개관은 2020년 6월 15일로 연기되어 있음.

- 구립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바 회원증 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37조에 따라 수수료를 조례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---

#### 1) 지방자치법

제39조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4.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·수수료·분담금·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

제137조(수수료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139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○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22조(도서관의 수수료 등)제1항제2호가목의 회원증 재발급에 따른 수수료 중 RFID카드형 2,000원을 1,000원으로 50퍼센트 조정하려는 것으로 보임. 다만, 회원증 재발급 수수료가 재료비에 따라 결정되기 보다는 재등록에 따른 인건비, 운영비 등도 포함된다고 보이는 바 1,000원이 적절한지 설명이 필요해 보임.

- 한편, 구립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도 없고 회원증 발급에 따른 수수료 규정도 없이 회원증 재발급 수수료가 규정된 것은 입법체계상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 논의가 필요해 보임.

- 개정문 중 ‘별표 1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.’ 는 ‘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’ 로 규정하는 것이 입법형식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되고 별표 1의 별지가 누락되어 있어 개정문을 규정한 법적의미가 없어 논의의 실익이 없다고 보여짐.

**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“생략”**

**5. 토론 요지 : “생략”**

**6. 심사결과 : “수정가결”**

**7. 소수의견의 요지 : “없음”**

**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**

붙임 1.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. 끝.

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

**수 정 안**

관련의안번호

제279호

제안일자 : 2020.9.18.

제안자 : 행정재경위원장

**1. 수정이유**

- 회원증 발급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신설하고, 입법형식 요건에 맞게 별지를 수정하려는 것임.

**2. 수정주요내용**

- 회원자격 관련 조항 신설(안 제21조의 2)
- 회원가입 관련 조항 신설(안 제21조의 3)
- 회원자격 상실 관련 조항 신설(안 제21조의 4)

#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1조의2(회원자격) 관장은 도서관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, 도서관 회원의 가입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
1. 대한민국 국민 또는 「출입국관리법」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
2.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21조의3(회원가입) ① 도서관 회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관장은 제21조의2에 따라 회원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회원증을 발급하며, 회원증은 관내 도서관에서 공동 사용한다.

③ 회원이 분실 등으로 회원증 재발급을 원할 시 관장은 재발급할 수 있다.

제21조의4(회원 자격 상실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유 발생 즉시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.

1. 회원 탈퇴 희망자
2. 대출 도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하고 변상하지 않은 사람
3. 대출도서를 2년 이상 무단 연체한 사람

안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[별표 1]

**도서관 명칭 및 위치(제3조 관련)**

| 연번 | 도서관명          | 위 치  |
|----|---------------|--|
| 1  | 도곡정보<br>문화도서관 |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18길 57 도곡정보문화도서관 3층~6층(도곡동 892-6) |
| 2  | 논현정보<br>도서관   |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169-1 (논현동 58-13)                |
| 3  | 논현도서관         |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43길 17 논현2문화센터 6층 (논현동 114-24)    |
| 4  | 정다운<br>도서관    |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67길 11 청담2문화센터 3층 (청담동 35-10)     |
| 5  | 청담도서관         |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79길 26 청담문화센터 7층 (청담동 124-1)     |
| 6  | 열린도서관         |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로115 2층(일원동 717)                   |
| 7  | 삼성도서관         |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616 삼성1문화센터 (삼성동161-2)          |
| 8  | 대치도서관         |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212 은마상가 2층 (대치동 316)            |
| 9  | 즐거운<br>도서관    |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77길 23 대치4문화센터 4층 (대치동 928-22)    |
| 10 | 행복한<br>도서관    |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65길 24 대치2문화센터 3층 (대치동 980-9)    |
| 11 | 역삼푸른솔<br>도서관  |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길 36 (역삼동 827-61)               |
| 12 | 역삼도서관         |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7길 16 역삼1문화센터 5층 (역삼동 829-20)     |
| 13 | 세곡도서관         |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 286 세곡문화센터 2층 (울현동 278-1)       |
| 14 | 대치1<br>작은도서관  |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391길 19 대치1문화센터 B1(대치동 646-2)   |
| 15 | 신사동<br>작은도서관  |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128 신사동주민센터 (신사동 548-1)         |
| 16 | 압구정동<br>작은도서관 |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151 압구정동주민센터 (압구정동 426)         |
| 17 | 역삼2동<br>작은도서관 |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314 2층 (역삼동761-18)               |

|    |                |  |
|----|----------------|--|
| 18 | 도곡2동<br>작은도서관  |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78길 34-9 도곡2동주민센터<br>(도곡동 518-8)  |
| 19 | 개포1동<br>작은도서관  |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310-17 개포1동주민센터 (개포동 660-7)          |
| 20 | 개포4동<br>작은도서관  |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38길 12 개포4동주민센터 (개포동 1211-4)          |
| 21 | 일원본동<br>작은도서관  |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126 일원본동주민센터 (일원동 735-3)             |
| 22 | 수서동<br>작은도서관   |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301-4 수서동주민센터 (수서동 718-2)            |
| 23 | 일원1동<br>작은도서관  |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대로 55길 14 일원1동주민센터 (일원동 712-3)         |
| 24 | 전자도서관          |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18길 57 도곡정보문화도서관 3층~6층<br>(도곡동 892-6) |
| 25 | 못골한옥<br>어린이도서관 |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7길3(자곡동607)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6 | 못골도서관          |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116(자곡동632)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7 | 세곡마루<br>도서관    | 서울특별시 강남구 현릉로590길 68(세곡동 521-1)                    |





사람에게 회원증을 발급하며, 회원증은 관내 도서관에서 공동 사용한다.

③ 회원이 분실 등으로 회원증 재발급을 원할 시 관장은 재발급 할 수 있다.

<신 설>

제21조의4(회원 자격 상실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유 발생 즉시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.

1. 회원 탈퇴 희망자
2. 대출도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하고 변상하지 않은 사람
3. 대출도서를 2년 이상 무단 연체한 사람

#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         |    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<br>번호 | 279 |
|----------|-----|

제출년월일 : 2020. 5. 29.  
제출자 : 강남구청장  
제출부서 : 문화체육과

## 1. 제안이유

2020.04.23.에 운영을 시작한 세곡 커뮤니티센터 내 ‘세곡마루도서관’을 우리구 도서관으로 지정하고, 회원증 재발급 수수료가 재료비에 비해 높아 수수료를 조정하여 주민들의 부담을 낮추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‘세곡마루도서관’을 강남구 도서관으로 지정(안 제3조 별표1.)
- 나. RFID카드형 회원증 재발급 수수료를 1,000원으로 조정(안 제22조)

## 3. 참고사항

### 가. 관계법령

#### (1) 「도서관법」

제27조(설치 등)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·운영하여야 한다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어르신복지과와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

(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(2) 입법예고(2020. 4.17. ~ 2020. 5. 7.) 결과, 아래의 의견 접수

- '세곡마루 작은도서관'에서 '세곡마루도서관'으로 명칭 수정 요청(어르신복지과, 2020.04.29.)

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(4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
(5) 성별영향분석평가

- 분석평가지 특기할 사항 없음(분석평가 완료)

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1항제2호가목 중 “2,000원”을 “1,000원”으로 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|    |                    |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|---|
| 15 | 신사동<br>작은도서관       |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128<br>신사동주민센터 (신사동 548-1)               |
| 16 | 압구정동<br>작은도서관      |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151<br>압구정동주민센터 (압구정동 426)               |
| 17 | 역삼2동<br>작은도서관      |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314 2층<br>(역삼동761-18)                     |
| 18 | 도곡2동<br>작은도서관      |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78길 34-9<br>도곡2동주민센터<br>(도곡동 518-8)    |
| 19 | 개포1동<br>작은도서관      |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310-17<br>개포1동주민센터 (개포동 660-7)            |
| 20 | 개포4동<br>작은도서관      |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38길 12<br>개포4동주민센터 (개포동 1211-4)            |
| 21 | 일원본동<br>작은도서관      |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126<br>일원본동주민센터 (일원동 735-3)               |
| 22 | 수서동<br>작은도서관       |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301-4<br>수서동주민센터 (수서동 718-2)              |
| 23 | 일원1동<br>작은도서관      |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대로 55길 14<br>일원1동주민센터 (일원동 712-3)           |
| 24 | 전자도서관              |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18길 57<br>도곡정보문화도서관 3층 ~ 6층<br>(도곡동 892-6) |
| 25 | 못골한옥<br>어린이도서<br>관 |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7길3(자곡동607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6 | 못골도서관              |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116(자곡동632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   |                    |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|---|
| 15 | 신사동<br>작은도서관       |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128<br>신사동주민센터 (신사동 548-1)               |
| 16 | 압구정동<br>작은도서관      |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151<br>압구정동주민센터 (압구정동 426)               |
| 17 | 역삼2동<br>작은도서관      |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314 2층<br>(역삼동761-18)                     |
| 18 | 도곡2동<br>작은도서관      |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78길 34-9<br>도곡2동주민센터<br>(도곡동 518-8)    |
| 19 | 개포1동<br>작은도서관      |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310-17<br>개포1동주민센터 (개포동 660-7)            |
| 20 | 개포4동<br>작은도서관      |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38길 12<br>개포4동주민센터 (개포동 1211-4)            |
| 21 | 일원본동<br>작은도서관      |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126<br>일원본동주민센터 (일원동 735-3)               |
| 22 | 수서동<br>작은도서관       |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301-4<br>수서동주민센터 (수서동 718-2)              |
| 23 | 일원1동<br>작은도서관      |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대로 55길 14<br>일원1동주민센터 (일원동 712-3)           |
| 24 | 전자도서관              |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18길 57<br>도곡정보문화도서관 3층 ~ 6층<br>(도곡동 892-6) |
| 25 | 못골한옥<br>어린이도서<br>관 |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7길3(자곡동607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6 | 못골도서관              |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116(자곡동632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7 | 세곡마루<br>도서관        | 서울특별시 강남구 현릉로590길 68(세곡동<br>521-1)                      |

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비용발생 요인

- 회원증 재발급 수수료가 재료비에 비해 높아 수수료를 조정하여 주민들의 부담을 낮추고자 RFID카드형 회원증 재발급 수수료 2,000원에서 1,000원으로 조정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4조제3항
  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7억원 미만인 경우. 다만, “한시적”이란 사업기간 1년 이하의 사업을 말한다.

### 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수입이 연평균 약 3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감소

### 4. 작성자

- 문화체육과 행정7급 윤병훈(02-3423-5947)